

영등포구의회
제20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10.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72호로 2017년 10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과징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한 법률의 명시적 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는 폐지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과징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한 법률의 명시적 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폐지 전 미결된 사항은 없는지 검토 후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관광진흥법

[시행 1995.1.1.] [법률 제4796호, 1994.12.22., 타법개정]

제19조 (과징금의 부과)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권한이 위임(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94·8·3>

2

관광진흥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25호, 2017.1.17., 타법개정]

제37조(과징금의 부과)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3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2절,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4절부터 제7절까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9절,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10절 및 제11절을 준용하고,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